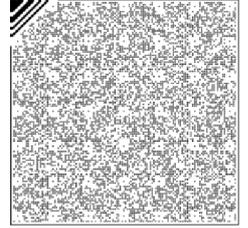
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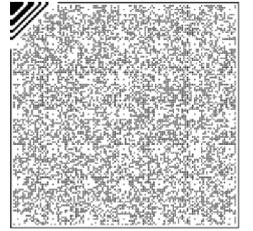
제목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

1. 보험급여과-376(2020.1.26.), 462(2020.1.29.), 485(2020.1.30.), 597(2020.2.26.), 922(2020.2.24.), 1066(2020.3.3.), 1642(2020.4.13.), 1263(2022.3.13.), 4211(2023.8.30.), 4241(2023.8.30.), 4263(2023.8.31.), 6265(2023.12.22.) 및 중앙방역대책본부-9883(2023.8.23.), 10205(2023.8.31.) 관련입니다.
2.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지침(제14-1판)」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,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주요 변경사항 >

구분	기존	변경
급여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,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로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* 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제14판)」내 ‘코로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’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,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로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의 <u>사례 정의에 부합하는 자*(이하 사례 해당자)</u> 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(제14-1판)」내 <u>‘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’으로 환자, 추정환자, 병원체보유자(PCR,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검사결과 양성)</u>
적용기간	○ '23. 8. 31. 진료분부터 적용	○ '24. 1. 1. 진료분부터 적용

붙임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기준 변경 안내 1부. 끝.

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
험공단이사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
장, 부산광역시장, 대구광역시장, 인천광역시장, 광주광역시장, 대전광역시장, 울산광역시장, 경기도지
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강원특별
자치도지사

주무관 **박혜진** 보건사무관 **배윤영** 보험급여과장 **정성훈** 전결 2023. 12. 28.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6380 (2023. 12. 28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43 팩스번호 044-202-3937 / ellenpark127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